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審査報告書

1994. 3. 16

行政財務委員會

1. 審査經過

- 가. 提案日字 및 提案者: 1994年 3月 3日 區廳長提出
- 나. 回附日字: 1994年 3月 4日 回附
- 다. 上程日字: 第23回 永登浦區議會(臨時會)第1次 委員會(1994年 3月 16日) 上程議決

2. 提案說明의 要旨

(提案說明者 總務局長 尹鼎重)

가. 提案理由

지방공무원법 개정(법률 제4613호, 1993. 12. 27)에 따라 인사위원회 위원중 외부 위촉위원에 대하여 회의출석 등 실비보상 근거를 마련코자 함.

나. 主要骨子

- 일비: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비를 지급
- 여비: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2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 要旨

(專門委員: 姜性熙)

地方公務員法 第7條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現在 設置運營中인 人事委員會의 委員 5人以上 7人以下中 2人은 '93. 12. 27 地方公務員法의 一部 改正으로 因하여 地方公務員이 아닌 外部人士로서 人事行政에 關한 學識과 經驗이 풍부한 者 中에서 위촉하게 되어 있어 이들에 對하여는 同條例 第7條 第4項의 規定에 依據 豫算의 範圍內에서 日費와 旅費(公務로 여행할 때 2급 地方公務員에 相當하는 金額)를 實費補償하기 위하여 1994. 2. 15 市長으로부터 示達된 條例準則(案)에 따라 同 條例를 制定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要請案대로 制定함을 要한다고 思料됨.

4. 審査結果: 원안가결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(안)

의안 번호	216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: 1994. 2. 24

제출자: 영등포구청장

1. 제정이유

지방공무원법 개정(법률 제4613호, 1993. 12. 27)에 따라 인사위원회 위원중 외부 위촉위원에 대하여 회의출석 등 실비보상 근거를 마련코자 함.

2. 주요골자

- 일비 :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비를 지급.
- 여비 :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2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.

3. 제정근거

지방공무원법 제 7조 제 4 항

4. 조례(안) : 별첨

5. 참고사항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(안)

제 1 조(목적)

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 7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인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일비)

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비를 지급한다.

제 3 조(여비)

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2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